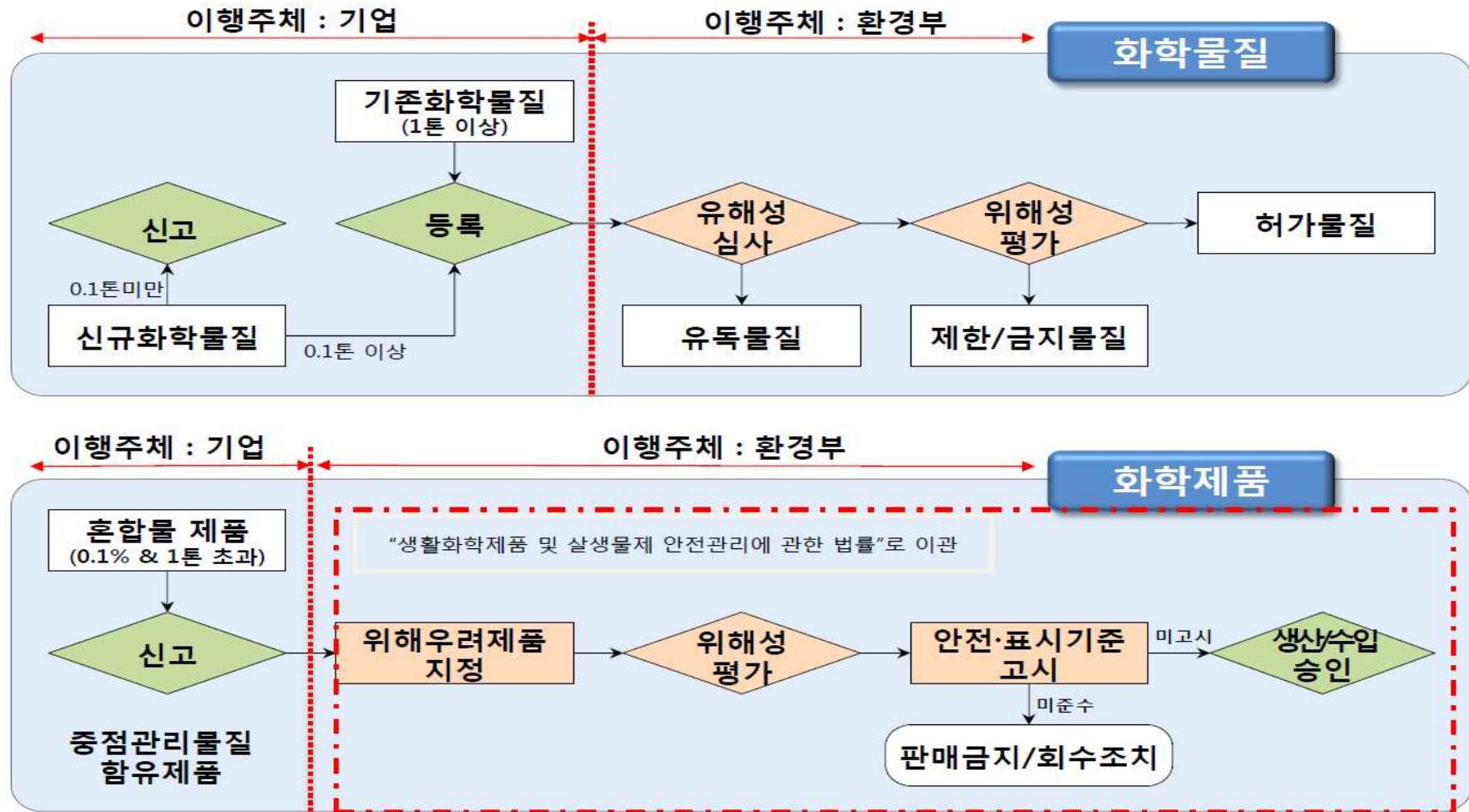


화평법 관리체계(2019.01.01부터)



화평법 화학물질 등록(2019.01.01부터)

❖ 등록의무자 및 대상물질 (법10조)

- 신규화학물질 0.1톤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 - * 1톤 이상 :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 1.1부터~12.31까지의 제조·수입 예정량
- 위해 우려가 큰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은 제조·수입량 연간 1톤 미만이라도 등록
- 0.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
- 국외 제조·생산자의 경우 국내의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 가능

❖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(법10조)

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

- 1,000톤 이상 물질 또는 CMR 물질 : 2021년 12월 31일까지
- 100~1000톤 물질 : 2024년 12월 31일까지
- 10~100톤 물질 : 2027년 12월 31일까지
- 1~10톤 물질 : 2030년 12월 31일까지

- 사전신고를 하여야만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음
- 사전신고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(기준 수입·제조자)
- 사전신고 기간 이후 최초 1톤 이상 제조·수입 기존물질은 제조·수입전 사전신고
- 수입/제조 톤수 범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신고
- 사전신고 제도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재(유럽 REACH 제도와 유사)
- 사전신고정보(연락처정보)는 사전신고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함
- CMR물질 목록은 18' 10월경 고시 예정

등록신청 제출자료

1. 신청인정보

- 제조·수입자 정보 - 명칭, 소재지, 대표자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메일 주소
- 국외제조사가 선임한 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- 선임된 자 정보(상호, 소재지, 연락처 등)
- 공동제출의 경우 - 대표자 정보(상호, 대표자, 사업자번호, 주소, 연락처 등)

2. 식별정보 : 화학물질명칭, 분자식·구조식, 고유번호, 상품명, 순도(%), 불순물, 부산물 명칭 및 함량

3. 화학물질 용도

-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
- 구체적으로 확인된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
-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도

4.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

- 물리적 위험성 (폭발성, 인화성, 산화성, 자연발화성, 물반응성 등)
- 건강 유해성 (급성독성,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,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)
- 환경 유해성 (수생환경 유해성, 오존층 유해성 등)
- 기타 유해성 (잔류성, 축적성)
- 화학물질의 표시 (명칭, 그림자, 신호어, 유해·위험문구, 예방조치문구 등)

등록신청 제출자료

5.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/ 6. 유해성자료 [규칙 별표1]

구분	$\geq 1\text{-}10t <$ *Level 1	$\geq 10\text{-}100t <$ *Level 2	$\geq 100\text{-}1000t <$ *Level 3	$\geq 1000t$ *Level 4	$\geq 0.1\text{-}1t <$ (2020.1.1부터) *Level 0
물리화학적 특성	8	11	13(2)	13(2)	5
인체 유해성	4	10(1)	11(2)	15(7)	2
환경유해성	3	5	13(8)	19(14)	2
계	15	26(1)	37(12)	47(23)	9

* 괄호 안의 숫자는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이 가능한 유해성항목

등록신청 제출자료

※ 유해성자료의 기준

- 자료의 수준 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(규칙 별표1)
 1. 화학물질의 물리적·화학적 특성,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**시험자료의 전문(全文)**
 2.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·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**충분한 정보가 기술된**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, 방법, 결과·결론을 요약한 **시험요약서**
- 지정된 **국내시험기관 또는 GLP기준 준수 외국시험기관 실시 시험자료** (규칙12,13조)
 1. 물리화학적 특성 1항목, 인체유해성 15항목, 환경유해성 14항목 해당 (전체 **30개** 항목)
 2. 외국시험기관 실시 시험자료 제출시 GLP 인증서 또는 GLP기준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
❖ 시험계획서 제출방법 (규칙14,15조)



등록신청 제출자료

7. 위해성자료

• 제출기준의 단계적 강화

등록대상기준물질의
1차 등록 완료 시점

구분	$\geq 100t$	$\geq 70t$	$\geq 50t$	$\geq 20t$	$\geq 10t$
시행시기	2015.1.1	2017.1.1	2018.1.1	2019.1.1	2020.1.1

• 자료작성항목 (규칙 별표2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화학물질 식별정보 및 물리적·화학적 특성 | 6. 환경에 대한 유해성(생태영향)평가 |
| 2. 제조 및 확인된 용도 | 7.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|
| 3. 분류 및 표시 | 8. 잔류성·축적성 평가 |
| 4. 물리적·화학적 위험성평가 | 9. 노출평가 |
| 5. 환경에 대한 유해성(분해성·농축성 등 거동) 평가 | 10. 안전성 확인 |

8.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(규칙 별표3)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|
| 1. 취급방법(저장·보관방법, 취급주의사항,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등) | 4. 폐기방법 등 |
| 2. 폭발·화재 시 대처방법(소화방법, 소화제·소화장비) | 5.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정보 |
| 3. 누출 시 방제요령(예방조치, 방제약품·장비·방법 등) | 6. 기타 안전 사용 지침 |

등록신청 제출자료의 생략

❖ 소량 (1톤 미만) 신규화학물질 (2020년 부터 < 0.1톤)

- 제출 : 제조·수입자의 기본정보, 화학물질 식별정보, 용도, 용도와 관련한 노출 정보
- 생략 가능 : 물리화학적 특성, 유해성, 위해성, 안전사용지침 관련 서류 (소유 시 제출 가능)

※ 단, 연간 100Kg~1톤인 경우는 고용노동부 산안법에 따른 위해·위험조사보고서 제출 필요
- 급성경구 시험자료 필요(2016년 2월17일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)

※ 연간 100Kg~1톤인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 필요

❖ 분리중간체

- 제출 : 제조·수입자의 기본정보, 식별정보, 용도, 분류 및 표시, 물리화학적 특성
- 생략 가능 : 유해성 자료, 위해성 자료, 안전사용 지침 자료(소유 시 제출 가능)

등록신청 자료 제출 방법

❖ **공동제출** (규칙16조) –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의 경우 각자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되, 아래의 자료는 공동으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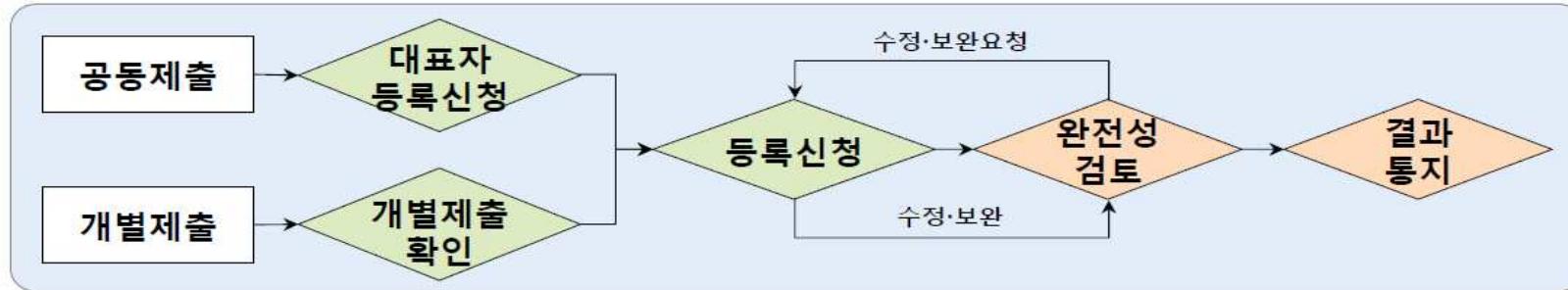
1.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
2. 화학물질의 물리적·화학적 특성
3. 화학물질의 유해성
4.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
5.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모두 합의할 경우 아래의 자료도 공동제출 가능
 - 위해성(화학물질의 전 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)
 -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(보호구, 폭발·화재·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)

❖ **개별제출** (영14조)

1.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2.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공동으로 제출하려는 시험항목에 대한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
 - 공동으로 제출하려는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의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
 - 무상으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경우

등록절차

❖ 등록절차 [법10,15조]



❖ 등록신청 [규칙5조] :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(kreachportal.me.go.kr)

❖ 공동제출 [규칙16조] :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→ 공동등록 의무

- 대표자가 공통서류 제출 후 나머지 개별 제출
- 공통서류 : 분류·표시, 물리화학적 특성, 유해성, 시험계획서 (위해성과 안전사용 지침은 모두 합의할 경우)

❖ 개별제출 [규칙16조]

1.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 2.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
 3.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, 시험자료의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
- ※ 개별제출 확인(협회) : 신청서, 개별제출 사유 증빙서류 구비

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

❖ 공동활용 절차와 방법 (규칙20조)



❖ 공동활용 세부내용 (규칙19, 20조)

- 공동활용 가능한 자료 – 물리적·화학적 특성, 유해성
-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여부 문의가 있을 경우 선 등록자에게 문의한 자 정보를 통보
-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여부 문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결과를 통보
 1.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
 2. 동일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내용
 - 가. 기존 등록신청자료 제출한자의 정보, 등록신청자료의 제출내역(척추동물시험자료 포함)
 - 나.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를 문의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
- **후 등록자는 선 등록자로부터 사용동의서를 제공받아 등록신청 시에 제출**
(단, 등록된 지 15년 경과한 등록신청자료는 사용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 가능)